

# 전 주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5구단1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
원 고 A  
피 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 
소송수행자 ○○○  
변 론 종 결 2015. 3. 27.  
판 결 선 고 2015. 4. 10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4. 5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,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(이하 "이 사건 처분")을 취소한다.

## 이 유

### 1. 이 사건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4. 5. 15. 00:08경 혈중알코올농도 0.138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

시 금마면 동서주유소 앞 도로에서 ○○○○ 소유의 서울 ○○○ ○○○○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4. 5. 22.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4. 6. 28.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,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, 2014. 7. 기각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1~5호증, 을 1~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### 가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3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등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점, 지입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 곤란해지는 점, 원고가 음주운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,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.

### 나. 판단

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,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,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).

또한,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·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(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8두 11779 판결 등 참조),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,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,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술에 취한 정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허용한도인 0.05%를 2배 이상 초과하는 0.138%에 이르는 점(혈중알콜농도 0.12%를 초과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없다), 1년의 결격기간 후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 때문에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고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박찬익